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5819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등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66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9

관하여,

가. 2007년,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 한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가.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귀속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를 취소한다.

3.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redacted]군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에 관하여,

가.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귀속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4. 12. 4. 원고에게 한 별지 '소득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에 관하여 2007년,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원천징수 중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2016. 5. 25. 원고에게 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 피고 [redacted]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9

수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E과 함께 그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F, G, J 등이 주주 지분과 임원 자격 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경영해 왔고, C은 원고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10,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는 1998. 6. 10. 성립되었는데, C은 원고 회사에서 2001. 5.경부터 2014. 1. 27. 해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E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5. 11.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7.경부터 2014.경까지 C은 원고 회사 주식의 33%를, E은 40%를 각 소유한 사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01. 5. 26. 성립된 회사로서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으며, C도 L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11. 26. 사임하였고 2014.경까지 주식의 30%를 소유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9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의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근무 형태, 근무 기간과 주식 지분율에 더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L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 회사에서 단순한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9

소득목록

소득자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redacted]	상여	2007년	29,300,000
		2008년	191,230,270
		2009년	156,361,454
		2010년	81,202,700
		2011년	91,141,470
		2012년	8,992,190
		2013년	12,270,010
합계			570,498,094
단위: 원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9

처분목록

처분청		피고 이천세무서장		피고 양평군청장	
처분일		2016. 5. 25.		2016. 5. 11.	
세목		소득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사업연도	2007년	7,000,980	700,090	700,090	60,200
	2008년	46,416,350	4,641,635	4,641,630	399,170
	2009년	45,830,850	4,583,085	4,583,080	394,140
	2010년	20,705,450	2,070,540	2,070,540	178,050
	2011년	22,859,290	2,285,920	2,285,920	196,580
	2012년	2,473,340	247,330	247,330	21,260
	2013년	1,826,530	182,650	182,650	15,700
합계		147,112,790	14,711,250	14,711,240	1,265,100
단위: 원					

끝.